



**한국ESG기준원**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

#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

**2025. 2.**

**한국ESG기준원**

## □ 구분별 조항 수

구분	조항 수	세부 조항
변경·보완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2.1 (설치 의무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li> <li>• II-1.1 (이사 후보의 결격사유)</li> <li>• II-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li> <li>• II-4.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결격사유)</li> <li>• II-6.1 (이사 후보 투표 원칙)</li> <li>• III-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li> <li>• IV-3.1 (배당금 지급)</li> <li>• V-1.3.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li> <li>• VIII-2.2 (준법지원인제도 도입)</li> </ul>
삭제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1.4.1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li> <li>• I-2.1.1 (상근감사를 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li> </ul>
자구 수정	1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li> <li>• I-6.4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기준)</li> <li>• II-1.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li> <li>• III-1.3.2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li> <li>• III-1.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시)</li> <li>• III-2.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li> <li>• III-2.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li> <li>• III-3.1.1 (경영진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li> <li>• III-3.3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li> <li>• V-2.1 (종류주식 발행)</li> <li>• V-3.1 (자본금 감소)</li> <li>• V-5.1 (주식연계채권 발행)</li> <li>• VI-3.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결의)</li> <li>• VI-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li> <li>• VII-1.5.3 (기후리스크 대응 정보 공개)</li> <li>• VII-3.3 (미공개 안건 처리)</li> </ul>

##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신규대조표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삭제	<p><b>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b>  <b>1. 이사회</b>            1.4.1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의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반대한다.  <u>* 현행 자산 2조 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상기 조항의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음</u></p>	<p><b>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b>  <b>1. 이사회</b>            1.4.1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의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반대한다.  <u>(삭제)</u></p>	- 추후 적용대상 확대 시 본문 개정 예정
변경 · 보완	<p><b>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b>  <b>2. 감사위원회</b>            2.1 (설치 의무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선임 주주제안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p>	<p><b>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b>  <b>2. 감사위원회</b>            2.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선임 주주제안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p>	- 기존 I-2.1 및 I-2.1.1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간결화
삭제	<p><b>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b>  <b>2. 감사위원회</b>            2.1.1 (상근감사를 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b>  <b>2. 감사위원회</b>            2.1 (중략)  <u>2.1.1 (삭제)</u></p>	- I-2.1 조항 개정에 따라 삭제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I.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상 “내부거래”, 상법상 “<u>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u>” 에서 정하는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에 속하는 거래 등(이하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I.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상법에 따라 규제되는 이사, 주요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이하 총칭하여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 문구 정비
자구 수정	<p>I.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6.4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기준) 내부거래 승인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의 성격과 거래금액</li> <li>· 거래조건의 적정성</li> <li>· 거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li> <li>·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li> </ul>	<p>I.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6.4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기준) 내부거래 승인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래의 성격과 거래금액</li> <li>② 거래조건의 적정성</li> <li>③ 거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li> <li>④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li> </ul>	-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II. 이사·감사</p> <p>1. 이사</p> <p>1.1 (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li> <li>·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li> <li>·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li> <li>· <u>겸임으로</u>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li> <li>· <u>직전 임기 동안</u>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li> <li>· 명백한 회사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체계 구축 또는 운영 등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li> <li>·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li> </ul>	<p>II. 이사·감사</p> <p>1. 이사</p> <p>1.1 (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②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li> <li>③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li> <li>④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li> <li>⑤ <u>과도하거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겸임으로 인하여</u>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li> <li>⑥ <u>이사 재선임(연속적, 비연속적 여부를 불문한다)의 경우에 있어 해당 회사의 직전 임기 동안</u>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li> <li>⑦ 명백한 회사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체계 구축 또는 운영 등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li> <li>⑧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li> </ul>	<p>-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및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II. 이사·감사</p> <p>1. 이사</p> <p>1.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li> <li>·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li> <li>·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li> <li>·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li> <li>· 이어나 제3자가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감안하여 이사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li> <li>· 이사가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p>II. 이사·감사</p> <p>1. 이사</p> <p>1.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li> <li>②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li> <li>③ 실제 책임 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li> <li>④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li> <li>⑤ 이어나 제3자가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감안하여 이사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li> <li>⑥ 이사가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p>-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II. 이사·감사</p> <p>2. 사외이사</p> <p>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 <u>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본인을 포함하여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p> <p>·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p> <p>·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u>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u>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p> <p>·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에 사외이사직 외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u>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u></p> <p>·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사외이사로써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가 <u>6년을 초과하는 자 (재임연수에는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임한 기간을 합산함)</u> (신설)</p>	<p>II. 이사·감사</p> <p>2. 사외이사</p> <p>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u>II-1.1의 이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② <u>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본인을 포함하여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u></p> <p>③ <u>해당 회사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u></p> <p>④ <u>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u>사업상 협력관계</u>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u></p> <p>⑤ <u>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에 사외이사직 외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u></p> <p>⑥ <u>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써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의 합이 6년을 초과하는 자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재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u></p> <p>⑦ <u>그 밖에 사외이사로써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u></p>	<p>-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및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II. 이사·감사</p> <p>4. 감사·감사위원회 위원</p> <p>4.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 <u>이사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중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p> <p>·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p> <p>·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 개최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p>	<p>II. 이사·감사</p> <p>4. 감사·감사위원회 위원</p> <p>4.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u>II-1.1의 이사 결격 사유 또는 II-2.1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II-2.1.1의 사외이사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p> <p>②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중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p> <p>③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p> <p>④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 개최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p>	<p>- 문구 정비 및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II. 이사·감사</p> <p>6. 이사 선임</p> <p>6.1 (이사 후보 투표 원칙)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p>6.1.1 (이사 선임 방법) (중략)</p> <p><u>(신설)</u></p>	<p>II. 이사·감사</p> <p>6. 이사 선임</p> <p>6.1 (이사 후보 투표 원칙)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p>6.1.1 (이사 선임 방법) (중략)</p> <p><u>6.1.2 (이사 후보의 경합시의 투표 원칙)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이사 후보 중 일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u></p>	-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자구 수정	<p>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3.2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u>특수관계인(친인척)</u>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p>	<p>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3.2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u>특수관계인</u>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p>	- 문구 정비
자구 수정	<p>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시) 최대주주 및 그 <u>특수관계인(친인척)인</u> 등기·미등기임원의 보수총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p>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시) 최대주주 및 그 <u>특수관계인인</u> 등기·미등기임원의 보수총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 문구 정비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2. 성과 보상</p> <p>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총발행주식 대비 그 규모가 과도하지 않거나 행사에 따른 희석률이 과도하지 않은 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요건이 <u>ROE 등 경영성과와 연동된 경우</u></li> <li>· <u>주가지수 등 시장요인을 통제</u>한 경우</li> <li>· 최초 행사가능시점을 법정시점보다 늦은 시점으로 정한 경우</li> <li>·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행사 요건이 있는 경우</li> </ul>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2. 성과 보상</p> <p>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총발행주식 대비 그 규모가 과도하지 않거나 행사에 따른 희석률이 과도하지 않은 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사요건이 <u>경영성과(ROE 등)와 연동된 경우</u></li> <li>② <u>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상대적인 주가상승이 있는 행사요건을 설정</u>한 경우</li> <li>③ 최초 행사가능시점을 법정시점보다 늦은 시점으로 정한 경우</li> <li>④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행사 요건이 있는 경우</li> </ol>	<p>-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및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p>
자구 수정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2. 성과 보상</p> <p>2.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li> <li>·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li> <li>·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li> <li>·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li> </ul>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2. 성과 보상</p> <p>2.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li> <li>②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li> <li>③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li> <li>④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li> </ol>	<p>-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2. 성과 보상</p> <p>2.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사외이사에게 <u>성과급,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u>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2. 성과 보상</p> <p>2.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사외이사에게 <u>성과와 연계된 보상(성과급,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등)</u>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 문구 정비
자구 수정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3. 퇴직보상</p> <p>3.1.1 (경영진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 경영진의 해직 또는 퇴직 시 제공되는 보상금에 대해 <u>주주의 동의를</u> 얻도록 하는 안에 한하여 찬성한다.</p>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3. 퇴직보상</p> <p>3.1.1 (경영진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 경영진의 해직 또는 퇴직 시 제공되는 보상금에 대해 <u>주주총회의 승인을</u> 얻도록 하는 안에 한하여 찬성한다.</p>	- 자구 수정
자구 수정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3. 퇴직보상</p> <p>3.3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사외이사에게 <u>퇴직혜택</u>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p> <p>3. 퇴직보상</p> <p>3.3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사외이사에게 <u>퇴직혜택(퇴직위로금 등)</u>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 자구 수정
변경·보완	<p>Ⅳ. 재무제표·배당</p> <p>3. 배당</p> <p>3.1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재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자본배분(정책), 배당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지급수준이 회사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다고</u>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p>Ⅳ. 재무제표·배당</p> <p>3. 배당</p> <p>3.1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재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자본배분(정책), 배당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과다배당으로 인해 지급수준이 회사가치를 훼손하거나 과소배당으로 인해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않다고</u>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b>V. 자본구조</b> 1. 자본 증가 1.3.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u>회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u> 에 한해 찬성한다.	<b>V. 자본구조</b> 1. 자본 증가 1.3.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u>회사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u> 에 한해 찬성한다.	- 의안분석 판단기준 명확화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2. 종류주식 2.1 (종류주식 발행) 회사의 <u>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mp;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 찬성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mp;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u> 종류주식의 발행에 반대한다.	<b>V. 자본구조</b> 2. 종류주식 2.1 (종류주식 발행) 회사의 <u>자금조달원 다양화 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찬성하고, 회사가치를 훼손하거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u> 종류주식의 발행에 반대한다.	- 문구 수정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3. 자본금 감소 3.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회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b>V. 자본구조</b> 3. 자본금 감소 3.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①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④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V. 자본구조</b> 5. 사채</p> <p>5.1 (주식연계채권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li> <li>·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li> <li>·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li> </ul>	<p><b>V. 자본구조</b> 5. 사채</p> <p>5.1 (주식연계채권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li> <li>②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li> <li>③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li> </ul>	-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 3. 상장폐지</p> <p>3.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결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에게 공식적인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li> <li>·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목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li> <li>· 기존 주주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li> </ul>	<p><b>VI. 기업구조조정</b> 3. 상장폐지</p> <p>3.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결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액주주에게 공식적인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li> <li>②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목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li> <li>③ 기존 주주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li> </ul>	-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4. 경영권 방어 장치</p> <p>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초과배당 등의 자본재구축 전략</li> <li>· 제3자에게 자산 매각 혹은 신주인수권 부여 등 조항의 사전 약정</li> <li>·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대표이사 혹은 이사진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 계약</li> <li>·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li> <li>· 임원 해임 시 초다수결의제 도입</li> <li>· 시차임기제 도입</li> <li>· 경영권 방어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발행주식수 증가, <u>자사주</u> 매각 등</li> </ul>	<p><b>VI. 기업구조조정</b></p> <p>4. 경영권 방어 장치</p> <p>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초과배당 등의 자본재구축 전략</li> <li>② 제3자에게 자산 매각 혹은 신주인수권 부여 등 조항의 사전 약정</li> <li>③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대표이사 혹은 이사진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 계약</li> <li>④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li> <li>⑤ 임원 해임 시 초다수결의제 도입</li> <li>⑥ 시차임기제 도입</li> <li>⑦ 경영권 방어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발행주식수 증가, <u>자기주식</u> 매각 등</li> </ol>	- 하위 세부항목 표기방식 변경 및 문구 정비
자구 수정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1. 주주총회의 소집·결의</p> <p>1.5.3 (기후리스크 대응 정보 공개) <u>탄소중립기본법</u>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등 기후리스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1. 주주총회의 소집·결의</p> <p>1.5.3 (기후리스크 대응 정보 공개)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등 기후리스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 문구 정비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3. 안전 상정 3.3 (미공개 안전 처리)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바로 <u>총회에</u> 상정하고 처리를 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3. 안전 상정 3.3 (미공개 안전 처리)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바로 <u>주주총회에</u> 상정하고 처리를 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자구 수정
변경 · 보완	<b>VIII. 기업내부통제</b> 2. 준법통제 2.2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u>법령상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준법지원인</u> 을 두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b>VIII. 기업내부통제</b> 2. 준법통제 2.2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선임) <u>법령상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없는 회사가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u> 을 두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준법감시인 추가 명시

끝.